

(화물공제 서울지부 과장, 차장 면담내용)

1. 리카온은 손해사정 의뢰 하면 처리하는 게 타손사법인 처리기일에 비하여 많이 느리다.
2. 리카온은 손해사정 의뢰 하면 방치수준 이다.
  - 위임건 중 처리하지 못할 건은 명확하게 위임취소요청 해 달라
3. 손해사정수수료 기준에(500만원 이상) 맞추려고 청구하지도 않은 금액을 손해결정금액으로 인정함.
  - 수수료 미발생 건은 출장비 일비 지급하고, 담당자와 상의하면 또 다른 건으로 위임 한다.
4. 리카온은 현장보고, 중간보고(진행사항 보고) 안 한다. 구두상으로 보고 안 된다.
  - 정립손사는 수시로 중간보고서(진행사항 보고서) 보내 준다.
5. 전문가인 리카온에 의뢰하였는데 피해자, 수리처에 왜 우리가 답변하고 설명해야 하는가?
  - 화물공제 담당자, 과장들에게 사고관련자들에게 불만전화 오지 않도록 해 달라
6. 적재물사고건 면·부책관련 조사 명확하게 손해사정보고서에 명시 해야 한다.
  - 중량초과, 결박상태, 적재물품 등
7. 화물공제는 수시로 감사팀에서 감사를 받는다. 그래서 손상보고서 세밀하게 점검 할 수 밖에 없다.
  - 근거자료 미비 시 화물공제 담당자들이 환수처리 한다.(손사의뢰건은 손사법인에서 환수)
8. 우리가 까다롭지만 서로 신뢰하여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.